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3. 8.28(수) 평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13. 9. 10(화)
- 다. 상정일자 : 2013. 9. 10(회) 제19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자치행정과장)

-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 안전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였고, 강원도에서도 안전조직 개편지침이 통보되었으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안전조직을 구성 운영하고자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홍금숙)

- “행정안전부” 명칭이 “안전행정부”로 변경되는 등 새정부의 안전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정부개편과 강원도 개편체계에 맞게 우리군 조직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변경하고 지금까지 안전업무 지도를 담당하던 “건설방재과”에서

전체적인 “안전업무를 총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1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농업기술센타”를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주민생활지원과·종합민원과·자치행정과·재무과·문화관광과·경제체육과·환경과·산림과·건설방재과·도시주택과·동계올림픽추진단”을 “기획감사실·주민생활지원과·종합민원과·자치행정과·재무과·문화관광과·경제체육과·환경과·산림과·안전건설과·도시주택과·동계올림픽추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사목 중 “여성·아동·보육·모부자가정”을 “여성·아동·보육·모부자가정,”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안전건설과

제3조제2항제10호가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안전업무 총괄

나. 도로, 교량 관련 업무

다. 농지개발 및 농업용 시설관련 업무

라. 정주권 개발 및 토목공사 관련업무

마.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

바. 지역단위 재난·재해 관련업무

사. 방재(복구지원) 관련업무

제3조제2항제10호아목 중 “안전지도”를 “치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소관사무”를 “소관 사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규정된 소관사무를수행한다”를 “다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4조에규정된 소관사무”를 “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를 “관장하도록”으로 한다.

제8조 중 “소관사무”를 “소관 사무”로 한다.

제10조 중 “소관사무를 분장하기”를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4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중 “소관사무”를 “소관 사무”로 한다.

제13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4조제3항·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3항·제6

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6조 중 “소관사무”를 “소관 사무”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제78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로 한다.

제18조 중 “소관사무”를 “소관 사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②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③ 평창군 용역과제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④ 평창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⑤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 ⑥ 평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 ⑦ 평창군 물 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 ⑧ 평창군 농업기반시설물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다목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 ⑨ 평창군 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 ⑩ 평창군 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 ⑪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